

제 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5. 12. 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05호로 2015년 11월 17일 김길자 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관내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
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 및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규정(안 제5조, 제6조)

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안 제7조)

다.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안 제8조, 제9조)

라. 위원회 설치 및 대행(안 제10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기능 대행

마. 신분보장 및 포상(안 제11조,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11. 6 ~ 11. 12)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 관련 법인, 시설, 단체, 기관 등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고자 제출된 조례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 1) 영등포구에서 관할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청장과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규정
 - 인권 및 권리를 보호하고 직무상 신분보장과 신변 안전보호, 고용안정 및 법률이 정하는 보수 수준이 도달하도록 규정

- 2) 사회복지사 등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실시
 - 종합계획에는 사회복지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수립
 - 이 중 지원사업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지원 사업, 인권 및 신변 보호 사업 등이 있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 설치 및 대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함.

4) 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신고하는 행위로 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로가 현저하고 모범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포상하는 규정

○ 사회복지 법인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사회
복지서비스 전달 및 제공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근로환경, 낮은 임금 수준, 과중한 업무량으로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적 제공과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사회복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보건법」](#)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전문개정 2011.8.4.]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